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86337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강경석

변론 종결 2020. 7. 16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C 태양광발전소 설비 2,0(X)KW(이하 '이 사건 발전소' 라고 한다), 이 사건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주) D의 법인 주식 및 이 사건 발전소와관련된 권리 및 8MW 업무협약(별첨)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 및 의무(이하 '추가 개발 대상'이라고 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7. 9. 22. 200, 000, 000원, 2017. 11. 17. 50, 000, 000원, 2017. 12. 29. 12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3항에는 '추가 개발 대상에 대해서 계약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가 일부라도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계약 관련 일체의 금원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9. 8.까지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 결 일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계약은 계약체결일인 2017. 9. 8.부터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 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개발 대상(8MW 발전소)과 상관 없이이 사건

발전소(2,0(X)KW)를 원래 약정대로 양수하기로 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석근판사 김경윤판사 김현영